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자료제출 방식 변경 알림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졸음운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매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하며,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 당초 운송사업자는 시·군·구청장은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제출하고, 시·군·구청장은 제출받은 내역을 다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 후 시스템에 등록하였으나, 제출현황이 부정확하고 절차상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3. 이에 자료제출 방법을 개선하여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https://drv.kotsa.or.kr>)에 휴식시간 보장내역(통보서)를 업로드(다운로드 받은 서식)하고 시·도지사가 제출현황을 마감(승인)하는 방법으로 변경('20년 1월분<'20.2.1~> 부터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운수업체 등에 안내 및 제출을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자료 제출방식 변경 안내 1부  
2.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주무관 **김순영** 행정사무관 **장기영** 대중교통과장 **김동준** 전결 2020.1.21.

협조자

시행 대중교통과-407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대중교통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825 팩스번호 044-201-5582 / [zzangu@molit.go.kr](mailto:zzangu@molit.go.kr) / 비공개(6)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